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4

제출연월일 : 2019.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시민(국민) 또는 외부전무가의 자문, 의견개진(수렴), 설문참여 등 채택 제안의 보완숙성을 위한 적극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의 적극적 제안참여활동에 대한 보상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월 6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제안의 자문, 의견개진(수렴), 설문조사 등 제안 숙성활동에 적극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혁신기획관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혁신기획관 이명훈
	팀장 직위·성명	혁신기획팀장 박춘오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희석 (790-509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2조(그 밖의 보상) (생략) <신 설>	제22조(그 밖의 보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제안의 자문, 의견개진(수렴), 설문조사 등 제안 숙성활동에 적극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